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

제정 2026. 1.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집행에 형평성·통일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세조사등”이란 「관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사, 「관세법」 제1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사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경정을 위한 조사,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심사(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경정에 관련하여 심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말한다.
2. “보정기간”이란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3. “보정통지”란 「관세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과세표준 또는 세액 등이 변경되어 기존에

발행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일반원칙

제4조(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제3호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수입자가 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관세법」 제270조(제271조제2항에 따른 미수범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270조의2 또는 제276조를 위반하여 고발되거나 같은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나. 「관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 「관세법」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 및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수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라. 관세조사등을 통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통지받은 후에도 「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관한 다음 신고 시에도 그 오류를 반복하는 경우

마. 「관세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같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바. 「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자료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해당 서류 또는 과세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수입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등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그 결정·경정 전에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관세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나.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행위

제3장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사유 및 시기

제5조(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미발급) ① 제4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관세조사등 통지 이후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② 세관장은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입자가 제4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미 발급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그 수정 전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세관장의 결정 또는 경정 행위) 제4조 본문에 따른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행위의 발생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이 부족세액을 경정한 때
2. 「관세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이 부과고지한 때

제7조(관세조사 통지 행위) 제4조제3호가목에 따른 관세조사 통지의 발생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세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관세조사를 사전통지한 경우: 동 통지서가 수입자에게 도달한 때
2. 「관세법」 제114조제1항제2호의 사전통지를 하게 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자가 관세조사의 착수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때

제8조(관세 범칙사건 조사 통지 행위) 제4조제3호가목에 따른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관세법」 제114조제1항제1호의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범칙조사”라 한다)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범칙조사의 착수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때(임의 현장방문, 압수수색 개시, 출석요구의 경우 등 중 빠른 때)를 해당 행위의 발생시기로 본다.

제9조(현지출장 또는 확인업무에 착수 행위) ① 제4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여 수입자가 이를 처음으로 알게 된 때를 해당 행위의 발생시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갱신심사를 위해 현장심사를 개시하는 행위

2. 관세조사・범칙조사 의뢰(예: 사전세액심사건)에 따라 세액탈루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입자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구 하는 행위

제10조(기타 유사 행위) 제4조제3호다목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가 포함되며 이 때의 해당 행위의 발생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칙조사 부서에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환검사를 위해 수입자에게 사전에 착수를 통지한 경우: 수입자가 외환검사의 착수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때
2. FTA부서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검증)를 위해 수입자에게 사전에 착수를 통지한 경우: 동 통지서가 수입자에게 도달한 때

제4장 조문별 미발급 사유

제11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2조제4항제1호에 관한 미발급) 세관장이 특수관계에 있는 수입자에게 「관세법 시행령」제31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및 「관세법」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관세법 시행령」제31조의5에 따라 문서(요구사유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적은 문서)로 요구하였으나 수입자의 자료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제출받은 자료에서 거짓이 확인된 경우
2. 세관장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세관장으로부터 한 차례 60일 이내에서 연장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으로 한다)에 세관장에게 요구받은 자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의5 제1항

1.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
2. <삭제 2019. 2. 17. 영 29530>
3.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와 국제거래가격 정책자료
4.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및 원가분담계약서
5.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서
6. 광고 및 판매촉진 등 영업·경영지원에 관한 계약서
7. <삭제 2019. 2. 17. 영 29530>
8.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9. 해외 특수관계자의 감사보고서 및 연간보고서
10. 해외 대금 지급·영수 내역 및 증빙자료
1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12. 그 밖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

제12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제2호에 관한 미발급) ① 관세조사등의 과정에서 수입자가 이미 통지받은 오류(해당 쟁점을 조사범위에 포함해 실시한 직전 관세조사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를 다음 수입신고시에도 반복하여 부족 세액이 발생하였음을 세관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장은 별표 3의 '오류 유형 구분표'에 따라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오류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상이 달라질 수 있거나 거래관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입자가 세번 또는 과세가격을 오인하여 신고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과세가격을 구성하는 각 요소에 대한 부담 주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입자가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
3. 과세가격에 포함·가산할 금액(예: 권리사용료 등)의 성격, 대상 등이 세관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오류의 성격, 대상 등과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경우
4. 수입자에게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제3호에 관한 미발급) ① 세관장이 「관세법」 제38조의2제2항 및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에 따라 보정(신청)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통지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10일(필요시 10일 연장) (이하 “보정신청 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보정신청을 하지 않아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및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36조에 따라 세관장이 경정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과세가격 결정방법, 품목분류, 세율 등에 의문이 있어 세관장이 경정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세관장에게 ‘보정(신청)통지 의견서(별지 제3호서식)’를 통해 제출하고 해당 심사신청(질의)의 결과대로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1. 「관세법」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
2. 「관세법」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신청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
4. 기타 세법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해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에게 질의

③ 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통지서를 통지받은 수입자가 보정신청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정(신청)통지 의견서(별지 제3호서식)’를 보정신청 기한 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의견에 대해 1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별지 제4호서식)하고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세법」 제10조에 따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보정신청 기한 이

내에 보정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2. 보정신청 통지를 받은 시점에 관세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3. 보정신청 통지를 받은 시점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불복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제14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제4호에 관한 미발급)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는 중대한 하자로 본다. 다만, 해당 가격신고서 신고 내용과 과거 신고 이력 등을 보아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인한 오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관세조사,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등을 통해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문서로 통지받은 후에 이의제기가 없고 사실관계가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신고서에 특수관계 여부 문항을 반복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아니오”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
2. 가격신고서에 특수관계자 거래에 따른 관세법상 수입물품 가격결정 방법 및 관련 과세가격결정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 관세조사,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등을 통해 「관세법」 제30조제3항 각 호에 대한 해당 여부를 문서로 통지받은 후에 이의제기가 없고 사실관계가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신고서 및 관련 문항을 반복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

▪ (예시 1: 미발급) 해당 물품의 사용에 제한이 있어 관세법 제3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함을 통지받았음에도 가격신고 시 이를 반영하지 않고 반복 신고하는 경우
▪ (예시 2: 미발급) 관세법 제30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방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통지받은 후에 가격신고서(A)로 반복 신고하는 경우

4.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이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따른 잠정가격신고 대상이 아님을 문서로 통지받은 후에 이의제기가 없고 사실관계가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수입물

품에 대해 반복적으로 잠정가격신고를 하는 경우

5. 「관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가격신고 내용과 명백히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예시 1: 미발급) 가격신고 시 수입가격 결정방법이 제조원가 기반으로 결정된다고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관세조사 결과 국내판매가격 기반으로 결정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 (예시 2: 미발급) 가격신고 시 과세가격결정자료로 권리사용료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관세조사 결과 계약서 내용 등을 허위 작성, 조작하거나 권리사용료와 무관한 자료임이 확인되는 경우

제5장 불복 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제15조(불복 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확정된 경우
2. 법 해석에 관한 질의 결과 법령해석 기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타당하다고 회신된 경우

제6장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전 검토 및 발급 신청의 접수와 처리

제16조(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처분검토회의 상정) ① 관세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처분에 대하여 세관장과 수입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세관장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처분검토회의에 상정하고 수입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다.

제17조(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① 수입자는 관세조사 등의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에 관하여 발생부서가 속한 세관을 관할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별지 제36호서식의 일반 관세행정 권리보호요청서를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제출하여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권리보호요청 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은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18조(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신청) ① 수입자가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5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2조제6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세관의 처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2조제7항 및 별표 2의 절차에 따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미발급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2026. 1.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는 2026년 1월 1일 가격신고한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일반 관세행정) 권리보호요청 처리절차(제1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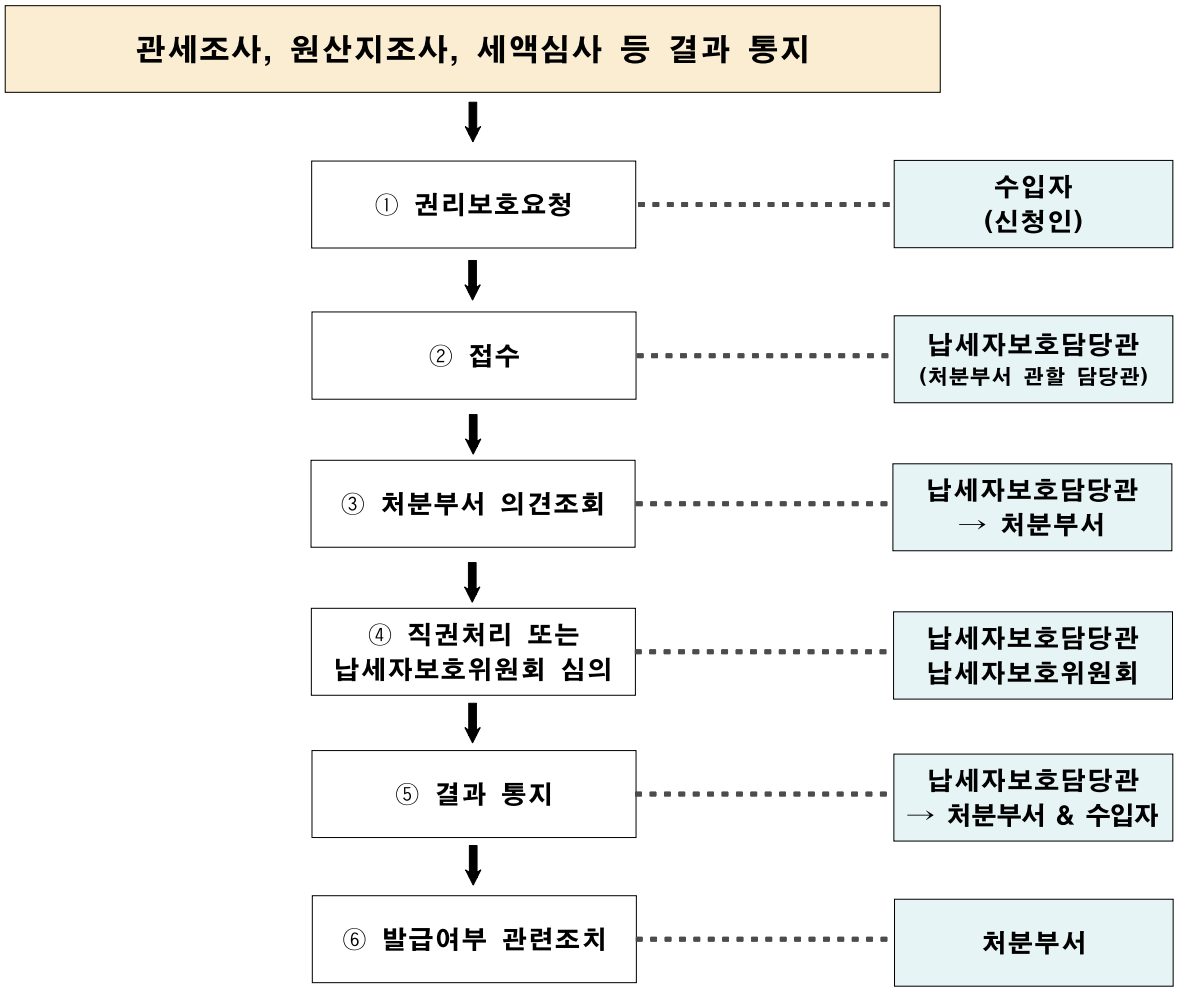

〔 **권리보호요청 관할 구분** 〕

세관	관할
인천공항본부 및 권역내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납세자보호담당관)
인천본부 및 권역내 + 평택세관	인천세관 세관운영과(납세자보호담당관)
서울본부 및 권역내	서울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부산본부 및 권역내	부산세관 세관운영과(납세자보호담당관)
대구본부 및 권역내	대구세관 세관운영과(납세자보호담당관)
광주본부 및 권역내	광주세관 세관운영과(납세자보호담당관)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권리보호요청’과 ‘발급신청’ 절차 예시

□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일반 관세행정) 권리보호요청 절차

○ ’26. 1. 1. 관세조사 결과 통지

○ ’26. 1. 2. 일반 관세행정 권리보호요청(수입자 → 납세자보호담당관)

○ ’26. 1. 22. 처리결과 통지(납세자보호담당관 → 수입자 & 처분부서)

［별표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건을 발급하려는 경우의 조치사항

1. 불복 등의 결과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15조 및 제18조제2항)

□［**처리방법**］‘전자통관시스템 ⇨ 징수 ⇨ 수납 ⇨ 세금계산서관리 ⇨ 수정세금계산서발급여부정정’ 화면을 통해 발급 조치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이 접수된 건의 처리 방법

(제18조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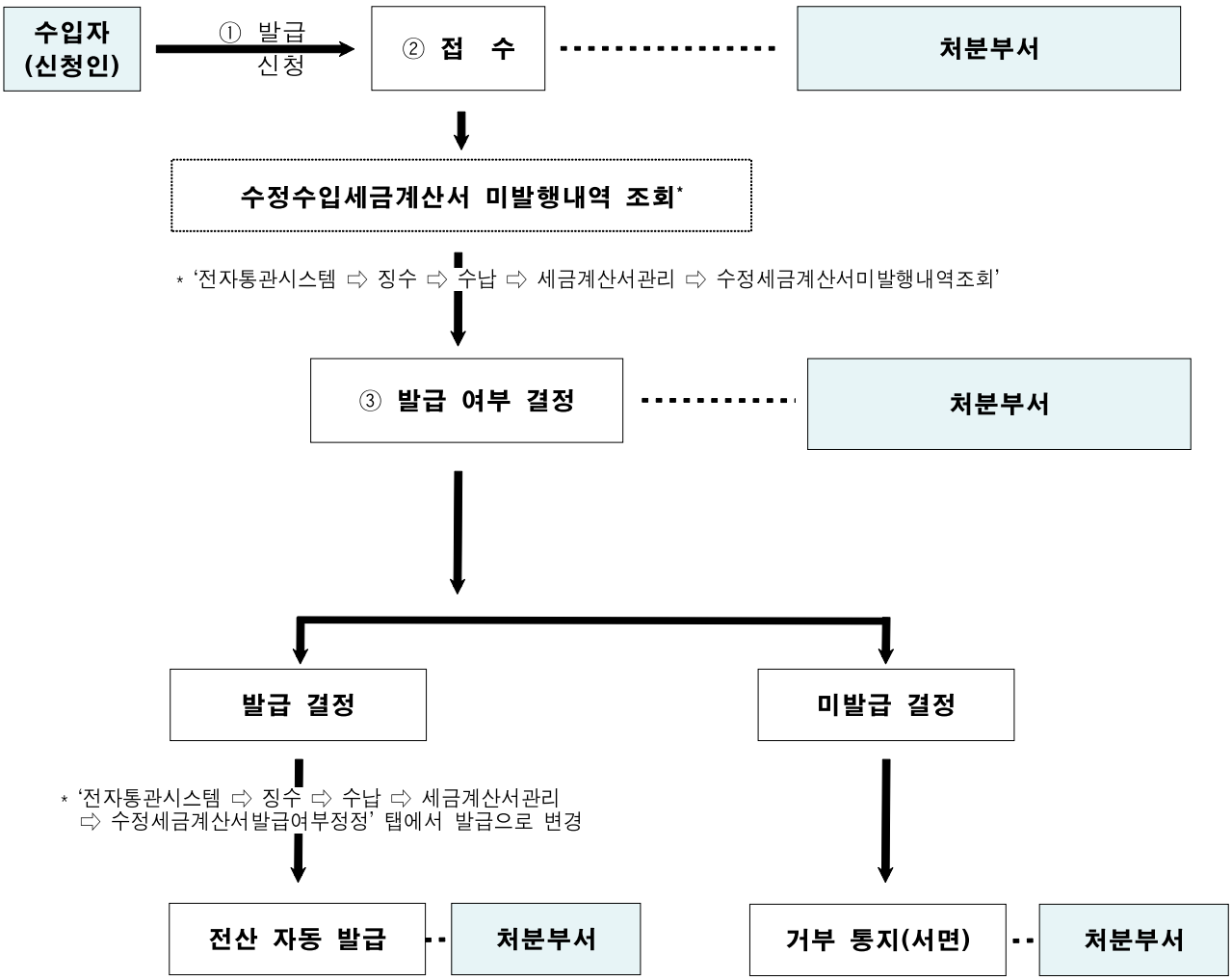

〔별표 3〕 오류유형 구분표

분 야	동일 오류 유형
세 율	동일한 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상이한 세번으로 적용한 오류
	동일한 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세율 적용 오류
감 면	감면 적용 법조에 따른 감면 요건 미충족 및 오적용
거래가격	실제지급금액 누락
	물품대가와 구매자에 대한 판매자의 채무 상계, 구매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물품대가와 상계
	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구매자가 변제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구매자가 제3자에게 물품대금 지급
	하자보증 비용의 별도 할인, 조건·사정 등에 의한 할인, 기타 비정상 할인
	간접지급금액(금융비용 등) 누락
	구매자가 외국 훈련·교육비를 지급
가산요소	수수료·중개료 등 성격이 동일한 수수료 누락
	용기 비용 누락
	수입물품의 포장 노무비, 자재비 등 누락
	생산지원(물품, 용역) 비용 누락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영업비밀, 노하우 사용료 등 권리사용료 누락
	운임, 운송관련 비용 누락
공제요소	수입 후 건설, 설치, 유지 또는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제 오류
	수입항 도착 후 운송, 운임, 보험료, 그 밖에 운송관련 비용으로 공제 오류
	우리나라에서 수입물품에 부과된 세금과 공과금으로 공제 오류
	연불조건 수입시의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로 공제 오류
수출판매가 아닌 경우	무상 수입, 무상 임차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등 오류
	위탁판매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등 오류
	수출자 책임 판매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등 오류
	지점 등 비독립 사업체의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등 오류
	임대차 계약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등 오류
	수출자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한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등 오류
제30조에 의한 방법배제	현저한 가격 차이를 사유로 과세한 경우
	구매자의 타 물품 판매가격과 수입물품 가격 연동을 사유로 과세한 경우
	타 물품 대가 지급과 결합된 사유로 과세한 경우
	판매자가 반제품 공급 후 완제품 받는 조건을 사유로 과세한 경우
	기타 계산 불능 조건 또는 사정을 사유로 과세한 경우
	조정 불능 사후귀속이익을 사유로 과세한 경우
	특수관계 영향에 따른 거래가격 배제를 사유로 과세한 경우
	기 통지 과세가격 결정방법 미이행을 사유로 과세한 경우
수량 또는 중량	수량 또는 중량 등 오기재 등
내 국 세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적용 등을 통한 부가가치세 누락,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세목별 탈루(부정/부당 감면 포함)

■ [별지 제1호서식]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이내

1. 신청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명	④ 생년월일
	⑤ 사업장주소	
	⑥ 전화번호(연락처)	⑦ 전자우편 주소

2. 기존 발급 내역

⑧ 발급일		⑨ 수입세금계산서 발행번호	
⑩ 수입신고번호		⑪ 납부고지번호	

3. 신청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⑫ 등록번호			
⑬ 상 호			
⑭ 성 명			
⑮ 사업장주소			
⑯ 과세표준			
⑰ 세 액			
⑱ 기 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제6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수정수입세금 계산서 작성	→ 발급
신청인	세관장	세관장	세관장	세관장	

※ 발급받고자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발급신청 사유 증명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80g/㎡)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고, 거래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합니다.

1. 신청인

① ~ ⑦: 신청서를 제출하는 수입자(사업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기존 발급내역

⑧ ~ ⑪: 기존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정보를 적습니다.

3. 신청 내용

⑫ ~ ⑱: 수정이 필요한 항목에만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사항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다만, 수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였으나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세관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⑯ 과세표준' 과 '⑰ 세액' 의 '변경 후' 란에 해당 금액을 원단위까지 정확히 적고, '사유' 란에 발급받고자 하는 사유 이외에도 추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일자' 와 '납부고지번호' 를 함께 적습니다.

■ [별지 제2호서식] 보정(신청)통지서

통지번호		**보 정(신 청) 통 지 서**
담당부서	○○세관○○과	
담당과장	○○○	
담 당 자	○○○	
연 락 처 (전화)	○○○-○○○○	

1. 수입신고(납세신고) 내역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일	
품명(규격)		수 량	

2. 보정 전

과 세 표 준	품목분류번호(세율)	세액	관 세	
			세	
			세	
			계	

3. 보정 후

과 세 표 준	품목분류번호(세율)	세액	관 세	
			세	
			세	
			계	

4. 증감내역

관 세	세	세	세		세액합계

5. 사유

보정유형	예) C:품목분류 오류, R:로얄티 누락, F:운임누락

「관세법」 제3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가 신고납부(납세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 보정신청할 것을 통보하오니 기한내 보정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정신청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보정(신청) 통지 의견서'를 보정신청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 보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2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 [별지 제3호서식] 보정(신청)통지 의견서

보정(신청)통지 의견서

기업명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대표자		
연락처		
사업장(주소)		
보정(신청)통지번호		
보정신청통지에 대한 의견	의견 유형	기간 또는 사유
	1. 보정기간 연장 요청	. . . ~ . . .
	2. 사전심사신청 진행 중	. . . ~ . . .
	3. 법령해석질의 진행 중	. . . ~ . . .
	4. 기타(정당한사유)	
	○ 세부적인 의견 - - -	

위와 같이 보정신청 미이행 사유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날인)

○○세관장 귀하

첨부서류	증빙자료

■ [별지 제4호서식] 보정(신청)통지 의견에 대한 검토서

보정(신청)통지 의견에 대한 검토서

기업명	ㅇㅇㅇㅇ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대표자		
연락처		
사업장(주소)		
보정(신청)통지번호		
보정(신청)통지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인정 여부	인정 / 불인정
	ㅇ 이유 – – –	

위와 같이 보정(신청)통지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